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2107
-----------	------

2021년 2월 2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정지권 의원 외 9인

나. 제안일자 : 2021년 1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1년 2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지권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변경하고 최근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도시철

도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도시철도 내 위생, 방역에 관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여객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음

나. 주요골자

- 여객은 쾌적하고 친절한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한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르며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안 제21조의 3)
-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안 제21조의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 26. ~ 2021. 2. 2.

○ 제출의견 : 있음

제출자	주요의견	처리결과
김00	학교현장 상황 고려 및 공공도서관의 역할 침범, 운영인력 등 방학기간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한 사항 검토	미반영 -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수정 가결

- 동 조례 제19조, 제21조 등에서 이미 “도시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례규정의 통일성을 위해 제21조의 2 본문변경은 수용
- 여객의 권리·의무 및 여객운송 조정 조항 신설은 동 조례 제1조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설립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있어, 일반 이용객의 권리·의무를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1) 도시철도과-1174호(2021.1.29.)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도시철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운송거부 및 승객하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여객의 권리와 의무 관련(안 제21조의3)

-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객의 권리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및 전염병 관련 시책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49조2)에서는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철도법」 제4조3)에서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해서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 제474)조에서는 “다른 이용객의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3) 도시철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4)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동 개정조례안 제21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해진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여객운송의 조정 관련(안 제21조의4)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대책을 따르지 않아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폭행·협박으로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년 8월 12일에 개정⁵⁾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마스크 착용

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법률 제17475호, 2020. 8. 12, 일부개정, 시행>

등의 방역지침 준수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철도안전법」 제49조6)에서는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퇴거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⁷⁾을 마련하고 있음
-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철도안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방역 등으로 운송을 거부하거나 여객을 하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동 개정조례안이 여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
- 하지만, “조례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⁸⁾ 및 “국가법령이 조례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조례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⁹⁾을 고려할 때

6)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8)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279호 판결

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판결 등)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동 조례를 개정하여
운송거부와 여객하차를 규정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
중교통의 특성과 선량한 대중교통이용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 참고로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지침 강화 현실
을 반영하여 「도시철도법」 제32조¹⁰⁾에 따라 동 조례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여객운송약관」¹¹⁾을 변경·시행¹²⁾하고 있음

10) 도시철도법 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약관을 정하여야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인 도시철도운영자는 이
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후략>

11) 여객운송약관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

- ③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화·녹음 또는 촬영을 할 수 있고,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은 경우 <신설>

12)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제2020-3회('20.5.29.) 제11호(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 규정안) : 수정의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하여 운송거정 및 퇴거조치 추가 반영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지하철을”을 각각 “도시철도를”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여객의 권리와 의무) ① 여객은 쾌적하고 친절한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여객은 도시철도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③ 여객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여객운송의 조정)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